

제 387 호

1973.7.13.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 택식

편집 : 문화공보실장 김진호

전화 75-7614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화 75-6090

시보

차례

이 일정으로 출판되는 시보입니다.
필름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시민파장

◎ 조례

제 788 호 서울특별시보전소설치조례증개정조례 3

제 789 호 서울특별시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대한 조례 3

제 790 호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대한조례 5

◎ 사령 12

◎ 정정 13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조 례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1973년 7월 11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88호

서울특별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서울특별시 보건소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1조 이조례는 서울특별시 보건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를 제 3조의 2로하고 제 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2조 보건소는 보건소법 제 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

제 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 4조 ①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의무기정으로 보한다.

②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장리 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 5조와 제 6조를 제 6조와 제 7조로 하고 제 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5조 보건소에 민원봉사실, 위생과, 보건지도과, 방역과를 두며 민원봉사실장과 위생과장은 지방행정 사무관으로, 보건지도과장은 지방의무기자로 방역과장은 지방보건기자로 보한다.

별표중 서울특별시 성북구보건소의 관할구역란에 도봉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의 관할구역란에 관악구를 각각 삽입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승인을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12일

◎ 서울특별시조례제 789호

서울특별시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에 관한조례

제 1 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 26 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지정 고시하는 재해위험지구(이하 "위험지구"라 한다) 내에 있어서의 건축물의 건축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수때 외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2. "내수침수구역"이라 함은 홍수때 내수로 인하여 침수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 3 조 (위험지구의 지정) ①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위험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1.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로 상승되었을 때 외수 및 내수가 침수되는 구역
2. 호우시 산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구역

② 서울특별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치체없이 위험지구의 위치·구역 및 그 면적을 2종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 4 조 (위험지구내의 건축제한) 전 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위험지구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및 중요변경 공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위험지구내의 대지의 지반면이 한강인도교 수위가 10.5미터 일대 내수 및 외수로 인한 침수면보다 1미터 이상 높고, 지구의로부터 말해 대지까지의 통행에 장애가 없는 대지안의 건축물
2. 목재적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3. 경차장, 경류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4. 자동차 차고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5. 공사용 현장 사무소 및 창고
6. 홍행, 박람회용 가설건축물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가설 건축물로서 존치기간이 6개월 이내

의 전축물

7. 제 2호 내지 제 4호에 개기하는 전축물의 부속 전축물

제 5조 (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의 구조)

재해위험지구내의 건축물을 목조 이외의 구조로서 침수의 위해로부터 안전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전고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 6조 (부적합기준건축물에 대한 조치)

위험지구의 지정 당시 기준 건축물이 제 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서 인명과 재산상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의 개수이전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 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제정한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3년 7월 12일

◎ 서울특별시조례 제 790호

서울특별시변소개량에 관한조례

제 1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시행령 제 22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과 지정구역내의 불량변소 개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한강수질의 오염을 방지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불량변소」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변소를 말한다.
가. 처티구역외에서 오수관이 오물 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하수도에 연결된 변소

나. 정화조의 청소가 불가능한변소
다. 분뇨탱크가 불침투질로 되어 있지 아니한 변소

라. 오물정화조 유출구의 높이가 연결된 하수도관의 높이 보다 낮아 하수의 유출이 불가능한 변소

13-6 제 387 호

시 보

1973.7.13

2 . «공공하수도» «처리구역» 및 «종말처리장»이라함은 하수도법 제 2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규정한 구역 및 시설을 말한다.	3 .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 및 일단 의 공업용지조성 사업지구
2 . «수세식변소»라함은 세척수에 의하여 분뇨를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를 말한다.	4 . 기타 시장이 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구역 ②시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구역 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4 . «수조식변소»라함은 변소에서 나오는 세척수와 분뇨를 오물정화조 를 거쳐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정화한 후 하수도에 방류시키는 변소 를 말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내의 모든 변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개량변소, 수조식변소 또는 수세식변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현지여건으로 보아 불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변소에 대하여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 «개량변소»라함은 변소에서 나 온분뇨를 저류조와 퍼내기조를 거쳐 서 위생상 지장이 없도록 정화한 후 퍼내는 변소를 말한다.	1 . 처리구역내의 변소는 수세식으로 하여야 한다.
제3조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의 지정)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중에서 변소개량을 위한 특정구역(이하 «구역»이라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2 . 처리구역외의 변소는 수조식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조식 변소의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개량식으로 하게 할 수 있다.
1 . 상수도 및 공공하수도의 시설이 완비된 지역	제4조 (기존변소의 개량) ①시장은 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지역내의 기존변소중 불량변소의 소유 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전조제3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개량할 것을 명할수있다.
2 .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량명령을 받은 벤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개량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개량신고서에 벤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신고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3일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벤소에 대하여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신고인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그 벤소를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가 수리된 날로부터 3일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명령을 받은 벤소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가 전 각항의 규정에 의한 개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량이 끝날때 까지 당해 벤소의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5조(신축벤소의 허가 및 준공) 벤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벤소도면을 첨부 제출하여 사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건축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필증을 받은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3-8 제 387 호

시 보

1973.7.13

제 1 호서식

불 량 변 소 개 량 신 고 서

서울특별시 범소개량에 관한 조례제 4조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1. 설치장소: 구 동 번지 호

2. 건축주: 구 동 번지 호

3. 건물의 종류: 용도: 연건평:

4. 1일 평균 대상인원:

5. 범소의 형식, 구조:

6. 세척수의 사용계획:

7. 소독방법:

8. 방류장소:

첨부: 범소개량도면 1부

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제 387 호

시 보

1973.7.13 13-9

제 2 호 서식

수 세 식 변 소
수 조 식 변 소 준 공 신 고 서
개 량 변 소

서울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제 4조제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춘공 신고합니다.

1. 설치 장소 :
2. 건물 주 :
3. 건물의 종류 :
4. 1일 평균 대상인원 :
5. 형식, 구조 :
6. 세척수의 사용계획 :
7. 소독의 방법 :
8. 방류의 장소 :
9. 공사 완료일자 :

서기 197 년 월 일

신고자주소 :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 울 특 별 시 장 귀 하

13-10 제 387 호

시

보 1973.13.

제 3 호 서식

검 사 필 증

197 년 월 일

제 호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면소 개량에 관한 조례 제 4 조 제 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면소의 공사는 검사 결과 건축법 동법 시행령 및 조례의 규정에
적합함을 증명함.

1. 허가번호 :

2. 허가년월일 :

3. 주요용도 :

연면적:

4. 건축장소 또는 축조장소 : 서울특별시 구 동 면지 호

5. 건축주 주소, 주민등록증 번호 :

성명 :

6. 검사년월일 : 197 년 월 일

7. 검사원 직위 성명 : 인

제 4 호 서식

수세식변소
수조식변소 허가신청서
개량변소

서울특별시 변소개량에 관한 조례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 도면첨부 신청합니다.

1. 설치장소: 구 동 번지 호
2. 건축주: 구 동 번지 호
3. 건물의 종류: 용도: 연건평 :
4. 1일 평균 대상인원 :
5. 변소의 형식, 구조 :
6. 세척수의 사용계획 :
7. 소독방법 :
8. 방류장소 :

첨부: 변소설치도면 1부

서기 1973년 월 일

신고자주소: 구 동 번지 호

성명:

서울특별시장귀하

사령		마포병원	지방보건기 자보(영리)	홍수길
◎ 1973. 7. 1.	지하철건설본부공사과장	김병린	중부병원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마포병원	지방보건기 원보	민영란
	본부공사과장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토목기정	마포병원	지방약무	유영숙
	지하철건설본부	서인원	기원보	
	본부공사진기과장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전기기정	마포병원	지방약무	심상경
	지하철건설본부전기과장에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기원보	
◎ 1973. 7. 11.	마포병원	이남순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지방간호	토목시험소	지방토목	황숙재
	기사보	소장	기정	
	남부병원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지방토목	
		부제회조사과장	기정	성옥호
		토목시험소	소장에	
		보함.	보함.	
	마포병원	정윤남	지하철건설본부	
	지방간호	부제회조사과장	지방토목	
	기원보	토목시험소	기정	
	영등포병원근무를 명함.	소장에	보함.	
	마포병원	임현자	지전과	김동호
	지방간호	:기전과	기기사	
	기원보	총무과관리제	장직무대리를	
	아동병원근무를 명함.	제작무	명함.	
	마포병원	박덕순	◎ 1973. 7. 12.	
	지방간호	도시계획과	지방토목	김주한
	기원보	기원보	기사보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토목	
		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박민자	마포구	김해양
	지방간호	지방토목	지방토목	
	기원보	기원보	기원보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토목시험소	토목	
	마포병원	권태숙	토목시험소근무를	
	지방간호		명함.	
	기원보			
	서대문병원근무를 명함.			
	마포병원	조연희	◎ 1973. 7. 15.	
	지방간호	서대문구	지방행정	정세경
	기원보	주방행정	기자보	
	동부병원근무를 명함.	지방농림기사보에	일함.	
		7호봉을	급함.	
		조경과근무를	명함.	

제 387 호

시 보

1973.7.13. 13-13

(정 정)

1973년 7월 5일자로 발간배부된 시보 제 384 호 그 1이 제 384 호 그 2의
오식이 였기 정정 합니다.